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21. 6. 21.

□ [1호]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세부기준

구분	대상정보	근거 법 조항(조항명)	주 관리부서
공익신고	- 공익신고자 관련 정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감사실
기록물	- 회의록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녹취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전 부서
보안	-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록으로서 비밀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25조(비밀의 공개)	전 부서
통계자료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의 통계 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전 부서
기타	-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해당 법 조항	전 부서

□ [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세부기준

구분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주 관리부서
귀빈 참석행사	-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 관련 계획, 숙소정보 등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	국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 시 대통령 및 주요인사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 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음	전 부서
비밀기록물 관리	-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 비밀기록물 대장 및 분류사유 - 암호자재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 시 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총무팀
시설관리 (방호)	- 연구원 시설 배치도 및 보안시설 (기계실 등) - 경비 및 순찰일지, 순찰경로 - 경비시스템 및 CCTV 위치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연구원 시설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시설구매팀
위기 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 안보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 (모의)훈련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태세 - 국가위기 단계별 대응 매뉴얼	공개 시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총무팀
전시대비	- 전시 주요 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및 인력동원계획	공개 시 악용되어 전시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총무팀
정보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및 구성도, IP주소, 도메인 관련 정보 -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1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	전산팀
	- 시스템 로그, 보안 패치 버전, 보안성 검토 등 보안에 관한 정보 - 공개될 경우 보안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 시 보안 침해의 우려가 있음	
직장 민방위	-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 교육훈련 실시 결과보고 - 대피시설 구조도 -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및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총무팀
기타 비공개 요청 정보	-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국제협력전략 및 주요 국제회의에 서 협상 진행 중이거나 준비, 대응 자료 중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 사항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전 부서

□ [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관련 정보

-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세부기준

구분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주 관리부서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 연구원 시설 배치도 및 보안시설 (기계실 등) - 경비 및 순찰일지, 순찰경로 - 경비시스템 및 CCTV 위치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시설구매팀
국민의 재산 보호	- 임직원 개인별 납세내역	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 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인사혁신팀

□ [4호] 진행 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세부기준

구분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주 관리부서
재판 및 소송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준비서면, 조서 -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및 대응방침 - 법률자문 및 사실조회 결과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인사혁신팀

□ [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세부기준

구분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주 관리부서
감독·지도 점검	- 불시 지도점검 계획 - 불시 조사·단속 계획	공개 시 감독·지도점검 등의 목적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감사실, 인사혁신팀, 전산팀, 총무팀
	-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독·지도점검 등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계약(입찰)	- 입찰평가, 낙찰 등 계약체결 관련 정보, 제안서, 협약서, 업체 경영 상태, 사업수행능력 등 입찰 및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시설구매팀
	- 입찰 관련 예정가격 및 산출기초 금액 관련자료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 시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입찰과정에서 제출받은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공개 시 당해 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교섭완료 이전에 공개 시 교섭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음	
규정 제·개정	- 심의 과정에 있는 자료 - 규정심의회위원회 서면결의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로서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감사실
기술개발	- 핵심산업기술 - 기술개발계획	공개 시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연구부서
내외부 감사	- 감사원·유관기관·자체 감사 관련 자료	공개 시 감사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	감사실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	-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전 부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 필요 시 확정된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 과정 종료 후 공개	공개 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 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 정한 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전 부서
	- 심의 중인 사업계획서 * 필요 시 심의 과정 종료 후 공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기획예산팀
	- 진행 중인 연구·평가·조사 관련 자료 (연구용역 중간보고 포함) * 용역 완료 후 공개(사안에 따름)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 시 연구의 자율적이고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연구부서, 연구사업팀
	-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등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회의 녹음 파일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 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전 부서
인권경영	-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있는 인권경영 추진 관련 자료 -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록 (인권침해 사건 관련 신고서 및 질문답변서 등 포함) - 인권영향평가 관련 자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로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감사실
인사위원회	- 인사(징계)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 인사(징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인사혁신팀
채용	- 전형별 실시계획 * 홈페이지 공고 또는 지원자에게 개별 공지 후 공개	공개 시 공정한 채용절차 진행 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인사혁신팀
	- 다른 응시자의 심사결과 (채점표, 석차 등)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공정한 채용절차 진행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음	

□ [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내용: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세부기준

구분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주 관리부서
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포함)	- 개인 이메일주소 - 개인 휴대전화번호 - 계좌번호 - 주택주소 - 주민등록번호 - 학력 및 경력 - 자격증 소지 여부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전 부서
	- 가족관계 -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인사혁신팀
	-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인사혁신팀
	- 개인에 대한 평가 기록	개인의 민감한 정보로 공개 시 사회적 활동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인사혁신팀
	- 신원조사 - 인사기록카드 - 징계 심의·의결·결정통지 - 퇴직사실 확인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개인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인사혁신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사실 기록 - 개인별 납세내역 - 개인별 재산 및 채무현황 - 개인별 급여 및 수당 내역 - 개인별 퇴직금 산정 및 지급 내역 - 개인별 복지포인트 사용 내역 - 개인별 건강검진 및 의료 기록 -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휴직 사유 및 휴가지 등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인사혁신팀, 재무회계팀, 총무팀
공인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이메일주소 - 개인 휴대전화번호 - 계좌번호 - 자택주소 - 주민등록번호 - 학력 및 경력 - 자격증 소지 여부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전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 -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인사혁신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사실 기록 - 개인별 납세내역 - 개인별 재산 및 채무현황 - 개인별 급여 및 수당 내역 - 개인별 복지포인트 사용 내역 - 개인별 건강검진 및 의료 기록 -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휴직 사유 및 휴가지 등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인사혁신팀, 재무회계팀, 총무팀
일반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개인 이메일주소 - 개인 휴대전화번호 - 계좌번호 - 자택주소 - 주민등록번호 - 학력 및 경력 - 자격증 소지 여부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전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사실 기록 - 납세 및 소득내역 - 재산 및 채무현황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인사혁신팀

※ 필요 시 특정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형태로 공개

□ [7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내용: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세부기준

구분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주 관리부서
법인·단체·기업·위탁업체·개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등 설립 받기인 성명, 주소 및 약력 - 출연재산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 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증명서(등기소, 금융기관 등) -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 예산서 - 총사업비 - 지급계획 -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 공익법인의 관련 법에 의한 제출의무가 부과된 경우 공개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연구사업팀, 시설구매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도급 대비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하) 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산업기술 - 내부자금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법인 등의 기술평가 결과 - 계약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이 제안한 내용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세부기준

구분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주 관리부서
건축 및 주택건설	-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도면, 검토결과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연구부서
도시개발	- 공표 전 도시재정비·재건축·개발제한구역·유통단지조성 사업계획 및 도면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지역개발계획	-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시설조성계획·협오시설 유치계획·역세권 개발계획 및 도면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